

FSS/2112-03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쟁점 분야: 매출채권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 결정일: 2013년
- 회계결산일: 2011.1.1.~201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온라인게임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며 이용자들에게 게임아이템 등을 매각함으로써 매출을 인식하는 매출의 성격상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소액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게 되며, 회사는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매출 및 매출채권을 직접 구분하여 인식할 수 없고,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 이하 ‘PG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계상한다.

회사는 매출채권의 연령기간별 손실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데, 다수의 이용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야 함에도, PG업체로부터 수취한 금액을 바탕으로 고연령의 매출채권부터 회수된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매출채권의 연령이 과소하게 산정되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게임아이템 판매 관련 매출채권에 대하여 게임 이용자별 채권 발생 및 회수현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연령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나, PG업체 채권으로 모두 통합하여 관리(선입선출법)함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이 잘못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83억원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에 문단62에서는 금융자산의 손상 차손을 추정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제표작성의 필수적 요소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PG업체의 제공정보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하지 않아, PG업체가 아이템 구매자 별로 매출채권을 관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PG업체를 매출채권의 주체로 보아 소액의 다수 채권자를 가진 매출

채권을 거액의 단일 채권자 매출채권으로 보아 연령적용을 잘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즉 다수의 소액 채권자 별로 풀링되는 개별적인 연령분석표를 입수하였어야 하나, PG업체의 채권으로 잘못 파악하고, 선입선출법으로 채권회수를 가정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40(회계추정치에 대한 감사)에서는 감사인은 회계추정치가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적절하게 공시되었는지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감사인은 회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채권을 회사가 외부의 PG업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었고, 채권회수가 지연되어 매출채권 잔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채권연령자료의 존재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결제대행회사도 채권연령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결제대행회사를 이용하여 매출채권 결제 및 회수를 하는 소규모 회사(게임업종, 온라인 판매업체 등)의 경우, 업무위탁을 이유로 매출채권 관리를 소홀히 할 소지가 있는 바,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 감사시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외부용역업체로부터 산출되는 재무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용역업체의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용역대행업체의 감사인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